

보수규정

제정	2009. 05. 27.
개정	2010. 07. 13.
개정	2011. 01. 06.
개정	2012. 09. 06.
개정	2014. 10. 24.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10. 01.
개정	2016. 05. 31.
개정	2017. 08. 17.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03. 12.
개정	2019. 12. 30.
개정	2020. 12. 24.
개정	2021. 06. 09.
개정	2022. 08. 08.
개정	2023. 04. 07.
개정	2024. 04. 08.
개정	2024. 10. 02.
개정	2025. 03. 05.
개정	2026. 01.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상근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기타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6.5.31.>
<개정 2017.8.17.>
2. “연봉”이라 함은 1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5.31.> <개정 2017.8.17.>
3.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수당”이라 함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1.1.6.>
5. “성과급”이라 함은 제14조의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12.9.6.>
6.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7. 직무급은 보직 및 직무의 난이도, 중요성 등 직무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제 2 장 보수의 산정

제4조(보수의 구성)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과 기타 수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3.> <개정 2011.1.6.>

② 계약직 직원 및 공무원 중 위원급,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주임급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③ 그 외 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한다. <신설 2018.12.28.>

제5조(연봉의 구성) 제4조 제1항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개정 2011.1.6.>

제6조(임직원의 연봉) ① 상근임원의 연봉은 별표의 연봉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직원의 연봉은 별표의 연봉지급범위 내에서 직무경력, 내용과 업적 및 역량평가 등을 토대로 기본연봉, 성과연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별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6.5.31.>

③ 직원의 연봉산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직원의 일정 연령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1.>

제7조(보수의 지급 등)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산방법) ① 퇴직·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해당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해당월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3.12.>

② 신규채용, 전직, 복직·정직 또는 감봉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급여의 일할액은 월급여의 30분의 1로 한다.

④ 급여계산에 있어서 원미만의 단위는 절사한다.

제9조(신규채용자의 연봉산정)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10조(휴직자 외 보수 등) 휴직자 외의 징계처분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보수의 지급

제11조(연봉계약) ① 직원의 연봉계약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장이 직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 당해연도에 근무 중인 직원의 차기연도 연봉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원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17.8.17.>

제12조(연차수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정상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비보직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당해 연도 근무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성과연봉으로,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산정한다

③ 자체성과급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른 기준월봉의 100%로 한다

④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2.9.6.> <개정 2021.6.9>

⑤ 성과급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9>

⑥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연도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1.6.9>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

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제15조(연봉조정시기) 연봉조정은 일괄적으로 매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임용, 승진, 파견, 휴직,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

제16조(선급제도) 직원을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외로 파견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견 당해연도의 6월분까지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제17조(복리후생비)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개정 2022.8.8.>

1.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보험
 2.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3. 출산장려금 지원
 4. 기타 원장이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퇴직금

제18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진흥원에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과 직원(계약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임기 만료 시
4. 고용계약 만료 시
5. 진흥원 해산 시
6. 중간정산 신청 시

제19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월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월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월을 최종월로 한다. 단, 퇴직의 사유로 당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전월을 최종월로 한다. <개정 2020.12.24>

③ 월평균임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1. 2항에 따른 최종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 총액(연차수당 및 성과급 제외)을 3등분한 금액
2. 2항에 따른 최종월을 포함한 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을 12등분한 금액
3. 퇴직 전 마지막으로(1회) 지급된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의 합산액을 12등분한 금액

④ 2항과 3항에도 불구하고, 상근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12.24>

제20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임용일부터 기산하여 만 12월을 1년으로 하고, 만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② 임기, 계약기간 또는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재고용 시에는 이를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임용됨으로써 제54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무급휴직기간(인사규정 제32조 제7호의 육아휴직에 의한 경우는 제외)

한다)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퇴직금의 특례) <조항 삭제 2014.10.24.>

제23조(퇴직금의 지급제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25조(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3조의2(임원의 퇴직금 지급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48조 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 이거나 형사재판이 계류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04.08.]

제24조(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

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 5 장 복지후생

제25조(수혜대상) 복지후생의 수혜대상은 임직원으로 한다.

제26조(복지후생 지원)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각종 보조비 및 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보건관리) 임직원의 보건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직무상 질병치료의 보조) 임직원이 진흥원 업무수행 중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9조(복지기금) ① 특수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기금은 진흥원 자체수입 및 기타 재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08.)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0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3.0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1.22.)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3.4.7.> <개정 2024.10.02.> <개정 2025.03.05.>
<개정 2026.01.21.>

연봉기준표

(단위 : 원)

구분	하한액	상한액
상근임원	100,000,000	180,000,000
G1급	78,583,000	90,263,000
G2급	67,173,000	84,263,000
G3급	54,563,000	78,263,000
G4a급	43,503,000	72,263,000
G4b급(대졸)	37,050,000	68,263,000
G4b급(고졸)	34,600,000	68,263,000

※ 개정된 연봉기준표는 2025년 연봉계약부터 적용